

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

| 식품군         | 식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| 개정 (안)  |
|-------------|--|---|---|
| 1. 과자류      | 1-6 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3년  | · 2년  |
| 2. 당류       | 2-2 포도당<br>2-3 과당                        | ②기타포도당 : 3년<br>①액상과당 : 2년   | ②기타포도당 : 2년<br>①액상과당 : 1년   |
| 4. 유가공품     | 4-6 발효유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농후발효유, 농후크림발효유 : 10일(0~10°)  | ②농후발효유, 농후크림 발효유 : 10일(0~10°) 단, 동결시킨 것은 1년(-15° 이하)  |
| 5. 식육제품     | 5-1 식육가공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베이컨 : 10° 이하 25일<br>③소시지, 혼합소시지<br>④비가열제품<br>⑤냉동 : -12° ~ -18° 90일<br>⑦분쇄육비가열제품<br>—냉동 : -12° ~ -18° 90일 | ②베이컨 : 10° 이하 15일<br>③소시지, 혼합소시지<br>④비가열제품<br>⑤냉동 : -15° 이하 3개월<br>⑦분쇄육비가열제품<br>—냉동 : -15° 이하 3개월 |
| 10. 면류      | 10-1 인스탄트 면류<br>10-2 일반면류                | 8개월<br>①건조제품 : 1년   | 8개월(단, 유당면은 6개월)<br>①건조제품 : 1년<br>(단, 완포장된 냉면, 당면은 1년 6개월)  |
| 11. 다류      | 11-5 고흥차<br>11-6 액상차                     | ①분말액기스차 : 2년<br>①천연농축액기스차 : 2년  | ①분말액기스차 : 1년<br>①천연농축액기스차 : 1년  |
| 13. 인스탄트 식품 | 13-1 콜로넬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2년  | · 1년  |
| 15. 조미식품    | 15-2 된장<br>15-3 고추장<br>15-4 춘장           | · 2년<br>· 2년<br>· 2년  | · 1년6개월<br>· 1년6개월<br>· 1년6개월   |
| 17. 인삼제품    | 17-2 인삼분말류<br>17-4 인삼음료<br>17-8 인삼캡슐(정)류 | · 2년<br>· 2년<br>· 2년  | · 1년6개월<br>· 종이재포장제품 : 6개월<br>· 병·관 및 합성수지 재포장제품 : 1년6개월<br>· 2년(단, 분말류는 1년6개월)                   |
| 20. 기타식품    | 20-4 냉동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1년(-15°C 이하)  | · 냉동만두 및 냉동과자류 : 3개월(-15°C 이하)<br>· 기타 : 9개월(-15° 이하)   |

제 3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. 제조, 가공기준중 10)을 11)로 하고, 10)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)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권장 유통기준을 초과해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등의 과학적 연구결과나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.

제 4. 식품별 기준 및 규격중 일부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. 이 고시는 고시한 날('90. 6. 11)로 부터 시행한다.